

생활체육지도자 인사 및 복무 규정

제정 2022. 02. 2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 생활체육 진흥을 목적으로 현장 지도와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문경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활체육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는 생활체육지도자운영규정 제2조에 의한 지역의 생활체육 현장 지도와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해 문경시체육회에 근무하는 지도자를 말한다.

제2장 인 사

제3조(생활체육지도자 인사위원회의 설치) 체육회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도자 채용에 관한 사항
2. 지도자 상벌에 관한 사항
3. 지도자 겸직 허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도자 배치 및 근무와 관련한 중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 연장자 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체육계, 학계, 문경시 담당과장, 지역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 ④ 사무국장은 간사가 되고 위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의결과를 기록하여 위원장의 날인을 받아 문경시체육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제4조제1호의 사항을 심의할 경우 위촉 위원 외 추가 위원 1명을 두어야 한다. 이 때 경상북도체육회 지도자 관련 업무 담당자(과장 이상)으로 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신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⑦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기간이 경과한 후 재 위촉되지 않으면 해촉된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즉시 해촉한다.
 1. 사망 시
 2.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제6조(채용) 지도자는 문경시생활체육지도자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채용하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조(채용 구비서류) 채용이 확정된 지도자는 채용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
3. 개인정보동의서
4. 자격증 사본
5. 경력증명서(입상경력 포함)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7. 건강진단서(의료기관 발행)

제8조(근무성적 평정) ① 회장은 운영규정 제16조에 의거 근무성적 평정(별지 제3호 서식)을 실시한다. 다만, 운영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지도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휴직)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휴직발령을 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때 : 징집 및 소집기간
2.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때 :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
3. 업무상 재해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최대 2년
4. 업무외 재해 등으로 60일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최대 4개월
5.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최대 4개월

② 지도자가 휴직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휴직일 15일전 휴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휴직자의 의무 및 급여) ① 휴직 중인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2. 휴직 중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체육회에 즉시 신고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외의 지도자의 휴직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자에 대해서는 평균급여의 8할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재해 인정기간동안 계속 지급한다. 단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 한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업무외 재해로 인한 휴직자에 대해서는 최초 3월간은 평균급여의 6할을 지급하되,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복직) ① 지도자는 휴직기간 종료 전 30일 이내 또는 휴직사유 종료 즉시 복직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② 지도자의 휴직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휴직사유의 계속 발생으로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도자를 퇴직 처리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지도자의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해당 지도자로의 복직원 제출이 없더라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정년) ① 지도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의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13조(퇴직) ① 회장은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의원퇴직 : 본인의 원에 의한 퇴직
2. 당연퇴직
가. 본인의 사망
나. 정년 도달
3. 직권퇴직 : 지도자를 해고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제14조(근로계약의 해지 등) ① 지도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직서를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구속, 업무외 재해 및 기타 사유로 장기간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30일 전 예고)
2. 계약 1년 이내에 10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경우 또는 평소 출근성적불량을 이유로 3회 이상 주의를 받은 경우
3. 정신 또는 신체상 결함으로 직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13조의 채용결격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된 때
5. 준수하여야 할 복무사항 및 근로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사업의 중단 또는 예산의 감축 등 기타 해당 체육회 형편상 지도자의 고용이 필요하지 아니할 때
7. 채용구비서류에 신원, 경력, 학력 등 주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또는 휴직사유 소멸 후 30일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9. 기타 이에 준하는 지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퇴직이 결정되었을 때

제15조(해고의 예고) 회장은 지도자를 해고 또는 직권해지 할 경우 해고일 30일전 사유 및 시기를 명시하여 해고의 예고를 해당 지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별지 제 8호 서식)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1. 지도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지도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제16조(퇴직의 제한)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지도자의 퇴직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수사 중 또는 기소 중인 때
2. 감사기관(부서) 등에서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제3장 복 무

제17조(담당업무) 지도자는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라 업무를 담당한다.

제18조(준수의무) 지도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성실의무 : 지도자는 체육회 및 해당 체육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라 직무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친절·공정·청렴 의무 : 지도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친절하고 공정·청렴하여야 하며, 그 직무에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사례, 증여, 향응 등을 받지 않아야 한다.
3. 품위유지의무 : 지도자는 해당 체육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항상 언행을 조심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비밀엄수의무 : 지도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해당 체육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무단으로 공표하지 않아야 한다.
5. 직장이탈금지의무 : 지도자는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 지각, 외출 등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19조(근무시간) ① 지도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중식시간 제외), 주 40시간(초과근무 시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지급)으로 하고, 근무시간은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하고 1일 지도방문 횟수 등은 세부 운영 지침에 따른다.

② 회장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휴일근무가 요청되는 경우 사전에 다른 휴일을 고지하여 휴일을 대체할 수 있고, 재정여건에 따라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

③ 사무국장은 근태관리 기록부(별지 제4호 서식)를 비치하고 지도자의 근태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도자의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4시간에 대하여 30분, 8시간에 대하여 1시간의 비율로 하고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도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다.

⑤ 회장은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결근)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일 퇴근 시각 전까지 신고하고 사무국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박한 사유 등으로 전일에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일 업무시각 전까지 연락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연락이 없는 경우와 담당책임자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결근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21조(휴일) ① 지도자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휴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4. 기타 정부 또는 체육회에서 정한 휴일

② 제1항의 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업무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연차휴가) ① 1년 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지도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3년 이상 근속한 지도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체육회장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지도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지도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휴가는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지도자의 청구(별지 제9호 서식)가 있을 때 부여한다. 다만, 업무 형편상 지도자가 신청한 기간에 휴가를 주기 어려울 때 회장이 휴가일을 변경하거나 휴가일을 지정하여 휴가 수 있게 한다.

⑥ 해당 체육회의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지도자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산부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3.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제23조(생리휴가) 여성지도자가 생리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월 1일의 휴가(무급)를 주어야 한다.

제24조(공가) 회장은 소속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시간을 공가(유급)로 허용해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 등에 의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3.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 출석할 때
5.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한 행사에 참가할 때
6.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및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8.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연수 과정에 참여할 때
9. 체육회 또는 지역체육회가 주관하는 지도자 직무교육에 참가할 때

제25조(경조사휴가) ① 회장은 소속 지도자의 가정의례와 관련된 다음의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 결혼 : 본인결혼 5일, 자녀결혼 1일
2. 사망

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나. 본인 및 배우자의(외)조부모 : 2일

다. 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 : 2일

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3. 출산 : 배우자 출산 10일

②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병가) ① 회장은 소속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병가기간 중 급여는 최초 20일 이내는 전액 유급으로 지급하고 20일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평균급여의 3분의 1만 지급한다.

③ 3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제27조(난임치료 휴가) 회장은 지도자가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휴가를 부여한다.

제28조(휴가기간 중의 휴일) 휴가기간 중의 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휴일을 산입한다.

제29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지도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지도자가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 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임신 중인 여성지도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지도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지도자의 임신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④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임신 중의 여성지도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⑥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지도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지도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지도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임신부 등 여성지도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른 도덕상 또는 보건상의 유해·위험한 직종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⑨ 임신 중인 여성지도자가 제5항의 쉬운 종류의 근로로의 전환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체육회 사정상 쉬운 종류의 근로로의 전환이 어려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지도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의한 산전후 휴가 이외에 30일의 무급휴가를 출산 전에 한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30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임신한 여성지도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여성지도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제31조(육아휴직 등) ① 지도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체육회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지도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지도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32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지도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19조제4항의 휴게시간 외에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제 4 장 급여 및 퇴직급여

제33조(급여의 결정) ① 지도자의 임금은 급여로 책정하며 주무부처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정한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급여 및 수당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추가(제수당 등)로 지급되는 급여의 결정은 문경시와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해당 급여지급일에 즉시 적용한다.

제34조(급여지급일)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도자 본인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휴일이나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35조(계산기간) 급여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36조(지급방법) 지도자의 급여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1. 급여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 계산을 원칙으로 한다.
2. 일할계산은 그 달의 급여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눈다.
3. 1년 이상 근속자가 15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당해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직권퇴직 또는 해고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7조(퇴직급여) ① 지도자가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내용은 그 규약에 따른다.
- ③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유를 제외하고 제한한다.
- ④ 회장은 지도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금의 납입 및 지도자의 퇴직연금 수령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공제) 지도자의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금 및 보험료 등을 공제한다.

1. 갑종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지도자 부담분

제39(시간외수당의 관리) ① 시간외수당은 제19조에 따라 연장 근무시간 내에서 지급한다.

- ② 시간외수당의 관리방식은 체육회 사무관리 규정에 따르며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연장·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을 준용한다.

제5장 징계 및 해고 등

제40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지도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2.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급여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4. 견책 :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제41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행위 유형·정도 및 고의·과실에 대한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제1호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행위가 업무처리과정의 단순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42조(징계사유) ①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한다.

1. 대한체육회 및 해당 체육회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체육회 및 해당 체육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체육회 및 해당 체육회에 재산상의 손실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5.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즉시 처리할 문서를 보류, 방치 또는 폐기하거나 근무일지의 허위작성, 동호인의 지도업무를 불성실하게 하였을 때
6.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징계사유에 의하여 체육회 및 해당 체육회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책임에 따라 변상토록 할 수 있다. 이때 지도자가 받은 징계 처분은 그 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3조(징계절차) ① 회장은 지도자에 대한 징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회장은 징계대상 지도자에게 징계사유와 위원회 심의회의 장소·일시를 통보(별지 제11호 서식)하여야 하며, 이 때 해당 지도자는 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③ 징계대상 지도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서면진술을 할 수 있으며, 진술의 의사가 없을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의 의

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④ 회장은 위원회의 징계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해당 지도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지도자가 징계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서면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상급단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별지 제15호 서식)
 - 1. 이의 제기의 취지
 - 2. 이의 제기의 이유 및 입증방법 등
 - 3. 징계결정 서면통지서
 - 4. 기타 필요한 서류 등
- ⑥ 징계 결과에 대해서는 즉시 상급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재심에 의한 징계처분은 원 징계처분보다 가중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재심에 의한 징계처분의 효력은 원 징계처분일에 소급한다.

제44조(범죄고발) ① 지도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 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3. 범죄내용이 과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 5. 기관특성상 비위발생 빈도가 높아 각 기관별로 특별히 지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6. 기타 범죄의 횡수, 수범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고발은 회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사실을 목인한 지도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타 고발 조치는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따른다.

제 6 장 보 칙

제45조(건강진단) 지도자는 매년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채용 시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건강진단을 생략한다.

제46조(재해보상) ① 지도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재해보상금 지급에 갈음한다.

② 회장은 재해보상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7조(보고) ① 회장은 신규채용, 퇴직, 징계 등 지도자 신분변동에 대하여는 문경시장 및 경상북도체육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문경시의 요구가 있을 시 지도자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준용준칙)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체육회 제 규정에 근거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이 규정에 대한 세부세칙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부 칙 <2022. 2.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 2]

[별표 1의 3]

복 직 신 청 서

인적 사항	① 성 명	한 글	② 소 속
		한 자	③ 생년월일
	④ 주 소		
⑤ 휴 직 사 유			
⑥ 휴 직 기 간			
⑦ 첨 부 서 류			
본인은 년 일 일 부로 휴직기간이 종료되어 복직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⑧ 인
문경시체육회 회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사 직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사직희망일자		
사직이유 (※구체적으로 기재)		
<p data-bbox="405 1368 1189 1406">위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data-bbox="692 1547 901 1585">년 월 일</p> <p data-bbox="740 1677 1125 1715">위 작성자 (인)</p> <p data-bbox="293 1767 694 1805">문경시체육회 회장 귀하</p>		

[별지 제9호 서식]

휴 가 사 용 신 청 서

인적 사항	① 성 명	한 글		② 소 속	
		한 자		③ 생년월일	
	④ 주 소				
⑤ 휴 가 사 유					
⑥ 휴 가 기 간					
⑦ 첨 부 서 류		병가 공가 경조사 휴가 사용시			
<p>본인은 상기와 같이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p>문경시체육회 회장 귀하</p>					

[별지 제10호 서식]

징 계 의 결 요 구 서

인 적 사 항	성명	한글		소 속		직위	
		한자		생년월 일		채용일	
	주 소						
징 계 사 유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①

[별지 제11호 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적사항	① 성명	한글		② 소속	
		한자		③ 직위급	
	④ 주소				
⑤ 출석이유					
⑥ 출석일시					
⑦ 출석장소					
유의사항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이 규정 제 조제 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생활체육지도자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					

.....(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적사항	① 성명	한글		② 소속	
		한자		③ 직위급	
	④ 주소				
본인은 귀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생활체육지도자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회 의 록

1. 회의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위원	(위원장)
	(위 원)
4. 출석직원	(간 사)
	(서 기)
5. 부의안건	
회 의 내 용	

